
제87차 대학평의원회 서면심의 회의자료

2022. 11. 22.



울산과학대학교
ULSAN COLLEGE

A-101 울산과학대학교학칙 개정안(1)

1. 개정이유

가. 2023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에 따른 학칙의 졸업 및 수료 요건 조문의 정비 필요

※ 「학사운영규정」 및 「수강신청지도세칙」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제37조제1항의 서술식 문장을 과정별 각 호로 구분하여 개조식으로 명시함

나. 제37조제2항 학위증서 수여 규정에 ‘전문학사학위, 학사학위, 전문기술석사학위’를 명시함

3.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4. 관련근거, 관련부서 협의 및 위원회 심의 관련사항

가. 관련되는 근거: 「학사운영규정」, 「수강신청지도세칙」

나. 관련부서 협의: 해당없음

다. 관련 위원회 심의: 해당없음

UCS-A-101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37조(졸업 및 수료) ① 졸업(학위수여)에 필요한 최저 취득학점은 74학점으로 하고 3년제는 110학점, 4년제는 137학점으로 하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1년과정 20학점(2년과정 6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양 및 전문교과의 필수과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개정> (2018.12.01.)	제37조(졸업 및 수료) ① 졸업(학위수여)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호와 같고, 소정의 교양 과목과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 2년제 : 74학점 이상 2. 3년제 : 110학점 이상 3. 4년제 : 137학점 이상 4. 학사학위전공심화 과정 가. 1년제 : 20학점 이상 나. 2년제 : 60학점 이상 5. 전문기술석사 과정 : 24학점 이상	문구 간소화 및 정비
<개정> ② 학칙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1항의 졸업 학점이 충족된 자는 별표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명으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단,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별표2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명으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개 정> (2011. 6. 15)	② 학칙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1항의 졸업요건이 충족된 자에게 다음 각호의 학위종별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1. 전문학사학위 : 별표 2, 별표 4 2. 학사학위 : 별표 3, 별표 3-1 3. 전문기술석사학위 : 별표 5-2	문구 간소화
<개정> ③ “생략” ④ “생략” ⑤ 1997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학위증서(양식A101-3)에 의하여 별표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⑥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하며 동규정에 의하여 소정 학점(2년제 74학점, 3년제 110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습자 중 본 대학교에서 2년제는 40학점, 3년제는 58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⑦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삭제> ⑥ <삭제> ⑦ “현행과 같음”	
<개정>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2 <개정 2020. 7. 1., 2022. 8. 1.>

전문학사 학위의 종류

종 별	해 당 학 과
공업전문학사	컴퓨터정보학부(소프트웨어개발전공, IoT기술전공), IT응용기술학부(소프트웨어개발전공, IoT기술전공), 컴퓨터IT학부(소프트웨어개발전공, IoT기술전공),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학부(건축전공, 실내건축전공, 토목환경전공, 토목조경전공), 건축학부(건축토목전공, 실내건축전공), 건축디자인학부(건축토목전공, 실내디자인전공), 건축과, 실내건축디자인과, 디지털기계학부(기계시스템전공, 금형디자인전공, 조선해양전공), 기계공학부(기계시스템전공, 기계설비전공, 조선해양전공, 스마트해양수송시스템전공), 전기전자학부(전기전공, 전자및통신전공, 반도체응용전공), 전기전자공학부(전기전공, 전자및통신전공, 스마트전자전공, 반도체응용전공), 환경화학공업과, 화학공학과, 산업경영과, 안전및산업경영과, 안전및산업경영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스마트제조공학과, 융합안전공학과
경영전문학사	세무회계과, 세무회계학과, 유통경영과, 유통경영학과, 유통물류경영학과, 융복합유통플랫폼학과
글로벌경영전문학사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가정전문학사	식품영양과, 식품영양학과
교육전문학사	유아교육과
체육전문학사	스포츠지도과, 스포츠지도학과, 스포츠재활학부(스포츠지도전공, 스포츠재활전공)
물리치료전문학사	물리치료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전문학사	치위생과, 치위생학과
사회복지전문학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학과
외국어전문학사	실무외국어과
호텔외식조리전문학사	호텔외식조리과, 호텔조리제빵과

※ 별표3 <개정 2020.7.1.>

학사학위의 종류

종 별	해 당 학 과
간호학사	간호학과

※ 별표3-1 <신설 2020.7.1. 개정 2021.3.1., 2022. 8. 1.>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위의 종류

종 별	해 당 학 과
공학사	기계시스템학과, 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 IT융합학과 기계공학과, 전기자동차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치위생학사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사	물리치료학과
간호학사	간호학과
유아교육학사	유아교육학과
이학사	식품영양학과
글로벌경영학사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경영학사	세무회계학과

※ 별표4 <개정 2020.7.1.>

계약학과 학위의 종류

종 별	해 당 학 과
공업전문학사	환경화학공업과, 산업경영학과, 산업기계공학과, 산업전기공학과, 생산기계공학과, 기계전기산업공학과, 조선해양산업공학과, 응용 화학공학과
호텔외식조리전문학사	외식조리과
경영전문학사	경영학과, 세무회계경영과

※ 별표5-1 <신설 2022. 8. 1.>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학과	수업연한	입학정원
미래모빌리티제조학과	2	10

※ 별표5-2 <신설 2022. 8. 1.>

전문기술석사과정 학위의 종류

학위명	종류	학과
석사	전문기술석사	미래모빌리티제조

A-101 울산과학대학교학칙 개정안(2)

1. 개정이유

- 가.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 입학금 폐지 법률 개정에 따른 입학금 폐지(개정일 2019. 12. 3.)
- 1) 교육부 입학금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으로 입학금을 등록금에 산입
 - 2) 입학금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결정을 위한 의견 수렴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입학금 폐지하고 입학시 등록금에 산입

2. 주요내용

- 가. 제52조(등록금)제3항 삭제

3.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4. 관련규정, 관련부서 협의 및 위원회 심의 관련사항

- 가. 관련되는 근거
- 1)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신설 2019. 12. 3.)
 - 2)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5823(2021. 12. 13.)호 「입학금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안내
 - 3) 기획팀-00509(2022. 10. 18.)호 「입학금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관련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안내」
- 나. 관련부서 협의: 입학홍보팀, 교무팀, 학생복지팀, 재무회계팀
- 다. 관련 위원회 심의: 등록금심의위원회(2022. 9. 30.)

UCS-A-101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52조(등록금) ①~② “생략” ③ 입학이 허가된 자는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입학자의 입학금을 면제하며, 편입학자는 관할청의 명에 의거 학교의 폐지 등의 사유로 편입학 하는 경우에는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⑥ “생략”	제52조(등록금)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삭제></u> ④~⑥ “현행과 같음”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에 따름
<신설>	<u>부칙</u>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A-101 울산과학대학교학칙 개정안(3)

1. 개정이유

- 가. 영상콘텐츠제작센터 및 에너지환경연구원(환경기술연구센터, 종합환경분석센터, 울산광역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직제를 산학협력단 학교기업에서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으로 개편하고, 산학협력단 부속기관 중 영상콘텐츠제작센터, 종합환경분석센터를 산학협력단 학교기업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63조의2(산학협력단)제2항제1호 부속기관 및 제3호 학교기업 수정

3.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4. 관련규정, 관련부서 협의 및 위원회 심의 관련사항

- 가. 관련되는 근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학교기업 업무매뉴얼(2020. 11.)」
나. 관련부서 협의: 에너지환경연구원, 산학협력단
다. 관련 위원회 심의: 해당없음

UCS-A-101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63조의2(산학협력단) ① “생략” ② 산학협력단 내에 다음과 같이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u>학교기업</u>, 사업기구를 둔다. 1. 부속기관 : 울산무인항공기술원, 창업보육센터, 메이커스페이스센터, 산학협력 혁신센터 2. 부설연구소 : “생략” 3. <u>학교기업 : 영상콘텐츠제작센터, 에너지 환경연구원(환경기술연구센터, 종합환경 분석센터, 울산광역시 탄소중립 지원센터)</u> 가. <u>소재지 :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울산과 학대학교 교지 내로 한다. 다만, 학교기업의 특성상 부득이 하거나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지 밖에 둘 수 있다.</u> 나. <u>사업종목 : 환경 및 화공 등 분석사업, 영상콘텐츠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사업</u> 다. <u>관련학부(과) : 화학공학과, 식품영양학과, 건축디자인학부,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IT응용기술학부</u> 라. <u>학교기업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u> 4. 사업기구 : 어린이급식관리사업단, 지역 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단, 일학습병행사업단,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사업단 <u><신설></u>	제63조의2(산학협력단) ① “현행과 같음” ② 산학협력단 내에 다음과 같이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u><삭제></u> 사업기구를 둔다. 1. 부속기관 : 울산무인항공기술원, 창업보육센터, 메이커스페이스센터, 산학협력 혁신센터, <u>영상콘텐츠제작센터, 에너지 환경연구원(환경기술연구센터, 종합환경 분석센터, 울산광역시 탄소중립 지원센터)</u> 2. 부설연구소 : “현행과 같음” 3. <u><삭제></u> 3. 사업기구 : 어린이급식관리사업단, 지역 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단, 일학습병행사업단,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사업단 ③ <u>산학협력단은 부속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교기업으로 운영한다.</u> 1. <u>운영대상 : 영상콘텐츠제작센터, 종합환</u>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③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u>경분석센터</u> <u>2. 소재지 : 울산과학대학교 교지 내(동부캠퍼스: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01, 서부캠퍼스: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57)</u> <u>3. 사업종목 : 환경 및 화공 등 분석사업, 영상콘텐츠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사업</u> <u>4. 관련학부(과) : 화학공학과, 식품영양학과, 건축디자인학부,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IT응용기술학부</u> <u>5. 학교기업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u> ④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u>부칙</u> <u>1.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u>	